의안번호	2211124
의 뢰 인	이해식의원
회 답 일	2025.7.21.
추계번호	25D345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현황 및 관련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4억 1,200만원, 2029년 2억 5,3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6억 6,500만원(연평균 1억 3,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지역사랑상품권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안 제3조의2 및 안 제15조의2)	412	-	-	253	-	665	133

주: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의2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5년 단위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15조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보조금 예산 신청을 받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른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이 경우 인구감소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음	의무규정

3	안 제15조의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	-행정안전부장관은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3조의2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 등)	○	-
2	안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보조금 예산 신청을 받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요청 규모 등에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현 시점에서 개정안 시행 이후 재정 지원 요청을 할 지방자치단체의 수,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지원 요청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 [참고자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미발행 지방자치단체 현황
3	안 제15조의2(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현황 및 관련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정안전부의 유사 사례 평균 예산을 준용함

○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26년에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26년과 2029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1]를 적용함

❑ 부칙에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기본계획 수립(안 제3조의2)

❑ 안 제3조의2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억 7,400만원으로 추계됨

○ 추계의 전제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최근 5건) 예산 평균금액[2](163백만원)을 준용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함

○ 추계의 전제에 따라 2026년에만 비용이 발생

[표 2]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기본계획 수립 (안 제3조의2)	174	-	-	-	-	174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4.11.)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CPI)	2.1	2.0	2.0	2.0	2.0	2.0

2) 행정안전부의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자료: prism.go.kr)

-2021년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190백만원), 2022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327백만원), 2022년 온천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98백만원), 2023년 재난안전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137백만원), 2023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65백만원)

-연구용역 예산 평균금액을 2023년 발생금액으로 가정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나. 실태조사 실시(안 제15조의2)

❑ 안 제15조의2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억 3,800만원, 2029년에 2억 5,300만원으로 추계됨

○ 추계의 전제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유사한 내용으로 최근 실시한 2건의 연구용역 예산 평균금액[3](223백만원)을 준용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함

○ 추계의 전제에 따라 2026년, 2029년에 비용이 발생

[표 3]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실태조사 실시 (안 제15조의2)	238	-	-	253	-	491

다. 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현황 및 관련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4억 1,200만원, 2029년 2억 5,3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6억 6,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기본계획 수립(안 제3조의2)	174	-	-	-	-	174
실태조사 실시(안 제15조의2)	238	-	-	253	-	491
합 계	412	-	-	253	-	66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 관련 연구용역(자료: prism.go.kr)
-2022년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효과 분석 및 발전 방향(223백만원),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효과 분석 및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모색(223백만원)(위 2건의 연구용역 내용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용 실태조사와 함께 경제적 효과 및 정책방향 등을 포함하고 있음)
-연구용역 예산 평균금액을 2023년 발생금액으로 가정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Ⅳ.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홍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홍연	02-6788-4673	limhy@nabo.go.kr

[참고자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미발행 지방자치단체 현황

❑ 2025년 기준 191개 지자체 발행 중

- (광역)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가 발행 중(6개 시·도 미발행)
- (기초) 226개 시·군·구 중 179개 시·군·구가 발행(47곳은 미발행)

구분	발행 지자체	미발행 지자체
합계	191개(광역 11개, 기초 180개)	53개(광역 6개, 기초47개)
서울	서울특별시(광역), 25개 자치구	
부산	부산광역시(광역), 동구, 남구	중구,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대구	대구광역시(광역)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군위군
인천	인천광역시(광역), 동구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광주	광주광역시(광역)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대전광역시(광역), 대덕구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울산	울산광역시(광역)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광역)	
경기	수원, 용인, 고양, 성남,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김포, 파주, 의정부,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이천, 구리,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경기(광역)
강원	강원특별자치도(광역),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충북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충북(광역)
충남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충남(광역)
전북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전북(광역)
전남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전남(광역)
경북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경북(광역)
경남	경상남도(광역),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제주	제주도(광역)	

자료: 행정안전부